
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6조제1항중 “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”을 “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에 제5호를, 동조에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5. 서울월드컵경기장</p> <p>⑤제2항제5호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·운영한다.</p> <p>별표 1의 “잠실종합운동장”란 다음에 “서울월드컵경기장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“동대문운동장”란 중 “동대문씨름장” 및 “효창운동장내 테니스장”을 각각 삭제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명칭</th> <th>시설명</th> <th>기능</th> <th>위치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서울월드컵경기장</td> <td>주경기장</td> <td>축구, 각종행사</td> <td>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번지 일원</td> </tr> <tr> <td>보조경기장</td> <td>축구, 각종행사</td> <td>„</td> </tr> </table> <p>별표 2 중 “체육경기”란의 명칭을 “체육행사”로 하고, “잠실종합운동장”란 다음에 “서울월드컵경기장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“동대문운동장”란 중 “배구장(씨름장)” 및 “역도장”을 각각 삭제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운동장별</th> <th>체육행사</th> <th>체육이외행사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서울월드컵경기장</td> <td>주경기장</td> <td>230,000</td> <td>930,000</td> </tr> <tr> <td>보조경기장</td> <td>70,000</td> <td>280,000</td> </tr> </table> <p>별표 3의 “시설별”란 중 “씨름장” 및 “수영장(실외)·(대인)·(소인)”을 각각 삭제한다.</p> <p>별표 6 “음향시설”의 산출기준란 중 “단, 올림픽주경기장의 기본료는 60,000원”을 “단, 올림픽주경기장 및 서울월드컵주경기장의 기본료는 60,000원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명칭	시설명	기능	위치	서울월드컵경기장	주경기장	축구, 각종행사	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번지 일원	보조경기장	축구, 각종행사	„	운동장별	체육행사	체육이외행사	서울월드컵경기장	주경기장	230,000	930,000	보조경기장	70,000	280,000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4조 제2항 중</p> <p>“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포함하여”를 “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, 서울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1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포함하여”로 한다</p> <p>안 제35조 제3항 중</p> <p>“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”를 “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(이하 “문예진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조(기능)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서울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·취소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기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</li> </ol> <p>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4조(구성) ① 문예진흥위원회는 회의안건에 따라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, 서울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1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자</p>
명칭	시설명	기능	위치																			
서울월드컵경기장	주경기장	축구, 각종행사	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번지 일원																			
	보조경기장	축구, 각종행사	„																			
운동장별	체육행사	체육이외행사																				
서울월드컵경기장	주경기장	230,000	930,000																			
	보조경기장	70,000	280,000																			